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최근 경위와 석유유통업

金 基 洪
(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 책임연구원)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경과

(1) 협상 현황

지난해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는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타결짓지 못하고 1991년으로 협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이래 만4년간의 협상이 진행되었고 15개 협상의제에 대해서도 많은 진전을 보았지만, 농산물 보조금 감축수준에 대한 미국과 EC의 대립 때문에 예정된 시한 내에(1990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를 끝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브뤼셀회의에서는 1991년 1월 15일 TNC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해 논의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TNC회의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단지 던겔 GATT사무총장이 그간의 막후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허지만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이틀 뒤에 발발한 걸프전쟁 때문에 전도가 극히 어두운 실정이다.

현재(1991년 1월)의 상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돌이켜보면 15개 협상의제는 거의 대부분 최종타결단계에 들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현안인 농산물 때문에 다른 의제의 최종타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을 뿐 농산물만 타결된다면 여타 의제의 타결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걸프전쟁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EC와 美國이 농산물 보조금 감축수준에 하루 빨리 합의한다면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앞당겨질 수 있다.

(2) 걸프전쟁과 우루과이라운드

현실적으로 걸프전쟁의 발발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걸프전쟁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의 지속기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걸프전쟁은 2~3개월내 종료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전쟁이 끝나자마자 즉시

우루과이라운드가 재개되고 빠른 시일 내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① 전쟁종료후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이 긴요하며 ② 이런 인식하에서 美國과 EC가 농산물보조금 감축수준에 빨리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개 의제의 타결내용은 작년 12월 브뤼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6개월 정도 계속될 경우 전쟁종료후 즉시 우루과이라운드가 재개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타결내용에는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전쟁이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루과이라운드는 재개될 것이지만 협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타결내용에도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1년 동안 주요 협상의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이 바뀌어 부문별로 재협상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루과이라운드가 실종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① 걸프전쟁이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단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4년간의 협상성과를 무위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며 ② 전쟁이 끝난 뒤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전후복구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서비스협상의 논의 현황

(1) 개관

서비스협상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 논의되어 왔다. 첫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제정작업 둘째, 부문별주석여 제정작업 세째, 최초의 자유화 약속이다. 현재 GATS와 부문별 주석서는 그 골격이 드러나고 있으며, 최초의 자유화 약속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GATS가 제정된 뒤 주석서가 만들어지고 그 뒤 최초의 자유화약속을 위한 양허협상이 뒤따라야 하지만, 신속한 협상진행을 위해 이 세가지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자유화약속이 마무리된 뒤 그 결과를 National Schedule 로 정리해야만 서비스협상이 완결되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선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협상의 일정도 걸프전쟁 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애초의 계획대로 라면 1991년 3월말까지 각국이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양허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이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상시한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한 美國의 태도나 우루과이라운드에 계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EC의 태도를 볼 때 이 일정대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럴 경우 서비스협상은 1991년 말까지 계속되어 1992년 1월부터는 서비스협정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GATS 제정작업

지난 해 12월까지의 회의 결과 GATS의 윤곽은 거의 드러나 있다. 비록 몇개 조항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GATS의 기본원칙과 구조는 거의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1〉는 이 GATS의 목차를 정리한 것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ATS는 전체가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뒤에 양허협상의 결과인 National Schedule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다.

제1부는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포괄범위에 대한 것이다. 제1부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앞으로의 실질적 자유화 협상의 폭과 범위(*umbrella*)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비스의 분류체계(*Nomenclature*)를 작성하자는 제의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시장개방의 형태가 Positive Approach이기 때문에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제2부는 일반적 의무사항으로서 협정에 가입하는 나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의무라고는 하지만 MFN, Transparency, Payments and Transfers등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의무규정이 별로 없다. 세이프가드, 정부조달, 보조금 등의 조항은 추가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2부의 조항 중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표－1〉 GATS의 목차

서 문(PREAMBLE)
第Ⅰ部 서비스무역의 범위와 적용대상(*SCOPE AND COVERAGE*)
第1條 범위/정의(*Scope/Definition*)
第2條 적용대상(*Coverage*)
第Ⅱ部 일반적 의무와 원칙(*GENERAL OBLIGATIONS AND DISCIPLINES*)
第3條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第4條 공개주의(*Transparency*)
第5條 개도국의 참여증대(*Increasing Pari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第6條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第7條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第8條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Monopolies & Exclusive Service Providers*)
第9條 Behavior of Private Operators
第10條 긴급수입제한조치(*Emergency Safeguard Measures*)
第11條 국제수지방어조치(*Measure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s*)
第12條 지불(*Payments and Transfers*)
第13條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s*)
第14條 예외(*Exceptions*)
第15條 보조금(*Subsidies*)
第Ⅲ部 구체적 서약(*SPECIFIC COMMITMENTS*)
第16條 시장접근(*Market Access*)
第17條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第Ⅳ部 점진적 자유화(*PROGRESSIVE LIBERALIZATION*)
第18條 협상(*Negotiation of Commitments*)
第19條 적용(*Application*)
第20條 개방스케줄(*Schedules*)
第21條 개방스케줄의 수정(*Modification of Schedules*)
第Ⅴ部 제도적 조항(*INSTITUTIONAL PROVISIONS*)
第22條 협의(*Consultation*)
第23條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and Enforcement*)
第24條 제도적 기관(*Institutional Machinery*)
第25條 기술적 협력(*Technical Cooperation*)
第26條 다른 국제협정과 기구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第Ⅵ部 기타규정(*FINAL PROVISIONS*)
第28條 수락 및 가입(*Acceptance and Accession*)
第29條 발효(*Entry into Force*)
第30條 비적용(*Non-Application*)
第31條 혜택의 부정(*Denial of Benefits*)
第32條 수정(*Amendments*)
第33條 탈퇴(*Withdrawal*)
第34條 용어의 정의(*Definition of Terms*)
第35條 부속서(*Annexes*)

제3조 MFN이다. 개도국들은 서비스협정에서 MFN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특히 美國은 다소 느슨한 형태의 MFN원칙이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협정적용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MFN원칙의 적용형태를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협정적용 서비스의 범위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컨대 美國은 항공, 해운 분야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면 MFN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3부는 구체적 서약(즉 약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협정가입국이면 무조건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약속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애초 선진국은 이 두 원칙을 일반적 의무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결국 일반적 의무가 아닌 「약속」의 범주에 포함되고 말았다. 이 두 원칙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양허협상은 사실상 이 두 원칙의 적용한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부는 양허협상과, 협상결과의 Scheduling, Scheduling 의 수정 등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운영규정이다. 즉 점진적 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부는 분쟁해결절차, 체약국단의 공동행위, 이사회 등의 제도적 규정을 밝히고 있으며, 제6부는 협정가입 및 발효, 협정 부적용, 개정, 탈퇴등 협정운영에 관한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3) 부문별 주석서* 제정작업

부문별 주석서(*Sectorae Annex*)제정작업은 현재 금융, 통신, 항공, 해운, 육운, 관광, 건설, 전문직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노동력 이동 등 10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부문별 주석서의 성격은 GATS의 각 조항을 특정 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명료화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GATS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포함되고 심지어는 MFN의 일탈에 대한 내용까지 제기되기 시작했다.

10개 부문의 주석서 제정작업은 그 속도가 제각기 다르다. 우선 건설, 전문직업 서비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석서가 불필요한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내려졌다. 금융과 통신 분야의 주석서는 선진국 간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개도국이 노동력이동에 대한 주석서와 연계시켜 반대하고 있으며, 해운 및 항공 분야에서는 美國과 日本이 아예 서비스협정의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받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 대다수 나라는 문화적인 영향을 이유로 국가간의 차별대우를 주장하고 있으나 美國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결국 부문별 주석서도 우루과이라운드의 다른 의제와 같이 선진국이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제정작업이 빨리 진행되는 반면, 개도국이 관심을 보이는 부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최초의 자유화 약속

최초의 자유화 약속이란 GATS와 주석서에 근거하여 서비스 부문별로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자유화 약속은 양허협상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허대상분야 : 가능한 한 전 서비스
- 양허분야 :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 양허협상양식 : Request / Offer 방식
- 양허협상절차 : 대개 ① 오퍼 리스트 작성 ② Request List작성 ③ 쌍무간 협상 ④ 합의된 내용을 참가국에 통지 ⑤ National Schedule 작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9개국(스위스, 美國, 日本, 호주, EC, 홍콩,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이 오퍼리스트를 제출했으며, 韓國도 1월 15일 오퍼리스트를 제출하였다. 韓國을 제외한 이들 9개국이 세계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무역 주요국은 거의 오퍼리스트를 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오퍼리스트는 단서와 조건이 첨부된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협상의 진행에 따라 리스트

* 분야별 부속서라고 하기도 한다.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화 약속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양허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는 National Schedule로 정리된다. National Shedule이란 최초의 자유화 약속을 일정한 형태로(그 형태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화시킨 것이며 GATS 뒤에 부속되게 된다. 그래서 GATS와 주석서가 모두 작성되고 National Schedule이 부속된 뒤, 이것이 GNS, TNC, UR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비로소 서비스 협상은 일단 종결되게 된다. 여기서 '일단'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일정한 시간(대략 3년 정도)이 경과하면 최초의 자유화 약속 외에 추가적인 자유화 약속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비스시장은 더욱 개방되기 때문이다.

3. 서비스 시장개방과 석유유통업

(1) 개관

韓國의 석유유통업이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韓國의 National Schedule상에 석유유통업을 포함한 유통업이 어떤 방식으로(시기와 범위) 개방될지 알아야 한다. 즉 양허협상을 통해서 한국이 교역상대국에게 제시하는 개방의 약속정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개방약속은 여타 나라의 개방약속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타국의 개방약속 또한 살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허협상의 전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韓國의 석유유통업이 입게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오퍼리스트을 제출한 나라의 유통업에 대한 개방약속 정도를 살피고, 다음 韓國의 오퍼리스트를 살핀 뒤, 석유유통업에 대한 영향을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

(2) 유통부문 오퍼리스트의 각국비교

오퍼리스트를 제출한 9개국의 유통부문에 대한 자유화 약속 정도는 〈표-2〉로 정리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부문을 오퍼한 나라는 美國, EC, 스위스, 日本, 뉴질랜드, 홍콩 이며 호주, 스웨덴, 캐나다는 오퍼하지 않았다. 〈표-2〉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표-2〉 유통부문 Offer List의 각국비교

	포 괄 범 위	자 유 화 수 준
美 國	· Franchising	· 노동력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 노동력 : 지배인, 중역 전문가에 대한 bound
E C[1]	· 도매업, 소매업 · 유통과 관련된 대리점 수수료와 커미션	·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 · 노동력이동에 대한 언급없음.
스 위 스	· 도매업, 소매업 · Counter-trading	· 노동력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 내국민대우에 대한 언급없음.
日 本	· Distribution	· 노동력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 노동력이동은 unbound
뉴질랜드	· 도매업, 소매업 · Counter-trading	· 내국민대우에 대한 언급없음. · 시장접근은 노동력이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없음.
홍 콩	· 소매업	·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제한 없으나 시장접근은 다소 제약됨.
호 주	· Offer 하지 않음.	
스 웨 덴	· 별도의 list 없음.	
캐 나 다	· Offer 하지 않음	

1) EC는 해당업종중 무기, 화학제품, 폭발물, 귀금속에 대한 무역은 제외함.

특징은 대개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누어 오퍼하며 대신 日本은 distribution 미국은 Franchising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각국은 도매업, 소매업 등 유통부문을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하나의 의문은 그러면 이를 도·소매업에 석유유통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오퍼가 포함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부문을 오퍼한 6개국은 석유유통업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유화 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美國, 日本, 홍콩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 EC, 스위스, 뉴질랜드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표-3〉 참조). 그러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약만을 살펴보면 美國과 홍콩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兩者에 대해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만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

구태여 이 자유화 수준을 석유유통업에 연결시킨다면, 이들의 오퍼 내용대로 자유화가 될 경우 석유유통업에 대한 이들 나라로의 진출은 매우 자유스러워질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韓國의 유통부문 오퍼리스트

韓國은 지난 1월 15일 8개 서비스부문에 대한 오퍼리스트를 GATT에 제출하여, 양허협상의 기초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韓國의 오퍼리스트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前文과, 시청각 서비스, 사업 서비스, 통신, 건설, 유통, 금융, 운송, 관광 등 8개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약속으로 나누어져 있다. 유통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약속은 〈표-4〉와 같다.

유통부문에 대한 韓國의 오퍼는 형태상으로는 앞의 선진6국에 비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즉 도·소매 구별없이(소매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 유통부문의 오퍼는 지극히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 ① ② ③은 오퍼하지 않는 유통부문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Negative List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통부문에 대한 韓國의 전반적인 오퍼는 선진6국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글의 관심사인 석유유통업에 포함되는 주유소 운영업, (가스 충전업), 석유소매업, (가스소매업),

〈표-3〉 자유화 수준의 세부비교

	美 國		E C		스위스		日 本		뉴질랜드		홍 콩		호주·스웨덴·캐나다
	MA	NT	MA	NT	MA	NT	MA	NT	MA	NT	MA	NT	
1)	NLC	NCQ	SS	SS	NL	/	NR	NR	NLC	/	UB	NCQ	
2)	NLC	NCQ	SS	SS	NL	/	NR	NR	NLC	/	NL	NCQ	
3)	NLC	NCQ	SS	SS	NL	/	SS	NR	NLC	/	NL	NCQ	
4)	B	NA	/	/	UB	/	UB	UB	UB	/	UB	NCQ	

1) Cross Border Trade
2) Movement of Consumers
3) Commercial Presence
4) Movement of Personnel

주 : MLC : No limitations or conditions
NCQ : No conditions of qualifications
B : bound
UB : unbound
NA : Not Applicable
SS : Stand Still
NL : No Limitations

〈표-4〉 한국의 유통부문① 오퍼리스트

분 야	공급양식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제약
도 매②	(1)	제한 또는 조건없음	조건 또는 제약없음
	(2)	제한 또는 조건없음	조건 또는 제약없음
	(3)	제한 또는 조건없음	조건 또는 제약없음
소 매③	(1)	제한 또는 조건없음	조건 또는 제약없음
	(2)	제한 또는 조건없음	조건 또는 제약없음
	(3)	매장면적 700㎡미만의 단일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외자도입법 제7조)	조건 또는 제약없음

註 : ① 수산물, 의약품, 비료, 농약, 시계, 보석, 인삼 등을 판매하거나, 700㎡이상의 점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상의 허가 취득 필요
② 곡물, 고기, 과실 및 채소, 알콜성음료, 비료, 농약, 서적 및 신문도매, 연쇄화사업, 일반무역, 무역중개 제외
③ 담배, 골동품 및 예술품, 곡물, 고기, 채소, 과실소매,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의약품, 화장품, 서적소매, 주유소운영, 가스충전, 연탄, 석유, 가스소매 제외
(1) 국경간 이동(*cross border dilivery*)
(2) 해외 소비(*movement of consumer*)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등은 아예 오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장개방의 영향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4) 석유유통업의 시장개방

1월 15일 제출된 韓國의 오퍼리스트에 석유유통업이 제외되어 있다고 조만간 석유유통업이 개방되지 않을 것이란 추측은 지극히 단견적이다. 그것은 ① 한국의 오퍼는 오퍼내용 보다는 오퍼를 했다는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② 양허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韓國의 오퍼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③ 韓國의 유통부문 오퍼는 최근 美國이 韓國에 요청한 유통부문의 요구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허협상이 시작될 경우 유통부문에 대한 韓國의 오퍼 내용변경은 거의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변경내용에 석유유통업이 어떻게 포함될지는 현재로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석유유통업이 포함된다면 상업적 주재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져, 개방의 초기단계에서 외국자본이 석유유통업에 그대로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측 석유유통업 시장개방은 다음과 같은 형태 혹은 방법을 띨 것이다.

- 빠르면 1992년부터 늦으면 1994년부터
- 50% 미만의 합작투자만을 허용한 뒤
- 점차 그것을 폐지해 가며
- 국내 석유업계의 개편과 유가구조를 고려해 가면서
- 반전한 내국민대우를 실현해 나간다.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석유업계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韓國의 1차 오퍼에 석유유통업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곧 시장개방의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마저 놓치게 된다.♣

내가 번돈 내가 써도 지나치면 흠이 된다